

입법예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3. 12.

농 립 축 산 식 품 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1. 개정이유

농어업경영체법이 개정(2024.2.17.시행)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하고, 이에 증명하는 서류와 확인 절차 등의 규정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부령으로 위임된 등록기준의 증명서류 및 확인 규정을 마련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은 등록기관장(농관원장,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위임
- 나. 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방법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등록기관장 고시 등으로 위임
- 다. 보조금 신청시 지자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신규등록 신청에 대한 공동 접수 및 절차 규정 삭제
- 라. 신규등록과 변경등록 신청서식 분리, 보조금 신청정보 삭제 및 거짓 등록시 벌금 부과 등의 안내 문구 추가 등의 별지 서식(11종)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또는 제2항”을 “및 제2항”으로, “사실 여부”를 “사실 여부와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로, “사실과 부합하면”을 “적합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②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농업경영체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영 제2조의2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영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농지대장,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명서류

2. 영 제2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등록신청일 이전 1년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하·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옥립, 인삼 등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 생산·육성 등 농산물을 해마다 출하·판매하지 않는 농업경영체의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영업을 허가받거나 신고·승계한 자

다. 「축산법」 제34조에 따라 개설된 가축시장을 통하여 가축을 구매하는 자

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마.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자

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3. 영 제2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설립 및 변경신고 확인증,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명서류

4. 영 제2조의2제1항제1호 또는제2호에 따라 농지를 경작하거나 농

업경영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1개 이상의 서류.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영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다. 종자·모종·묘목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라.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명서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3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사실 여부”를 “사실 여부와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로, “사실과 부합하면”을 “적합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②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어업경영체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영 제2조의3에 따른 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타 필요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영 제2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 판매금액이 등록신청일 이전 1년간 120만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

류

2. 영 제2조의3제1항제2호의 경우: 어업·양식업을 경영한 날이 등록 신청일 이전 1년 중 60일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2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설립 및 변경신고 확인증 등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영 제2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공통제출: 어업·면허·신고를 증명하는 서류(다만, 영 제2조의3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사업이 어업·면허·신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
-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등의 신청과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읍장·면장·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읍장·면장·동장은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전화로 변경등록된”을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변경등록된”으로 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전화로 변경등록된”을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변경등록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조해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6쪽 중 제1쪽)

접수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처리기간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30일
접수일				

1. 일반현황

① 경영주인 농업인	성명	국적	국내	주민등록번호		
	농업인 등록번호		국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우편번호
		마을명				
	영농 이력	농업시작형태	[]전 생애 농업에 종사(신규포함) []다른 산업에서 전환(귀농포함)		농업종사형태	[]전업 []겸업
		농업종사기간	년(농업 시작 연도 : 년)		신규등록사유	[]분리 []귀농 []상속 []기타()

②	성명	농업인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경영주와의 관계	연락처	농업시작형태	농업종사 형태	농업종사기간	③ 공동경영주 여부(O, X)
경영주						[]전 생애 농업에 종사 []다른 산업에서 전환	[]전업 []겸업	년(농업 시작 연도 : 년)	
외의 농업인						[]전 생애 농업에 종사 []다른 산업에서 전환	[]전업 []겸업	년(농업 시작 연도 : 년)	

※ ③ 공동경영주 여부는 ② 경영주 외의 농업인란 중 경영주와의 관계란에 ‘배우자’로 기입한 경영주 외의 농업인에 한해 공동경영주 등록 희망 여부에 따라 O 또는 X로 표시합니다.

(경영주 외의 농업인에 대해서는 뒤쪽에 있는 작성방법 1. 일반현황 ②란 경영주 외의 농업인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 및 사료작물 재배에 이용하는 초지는 ④-1 실제 지목을 '초지'로 등록합니다.

3. 가축·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축산·곤충 사육 농업경영체가 아님

⑤ 사육시설 현황							⑤-3 사육정보		
⑤-1 번호	사육시설 소재지	소재지 공부 면적(㎡)	시설면적(㎡)		경영 형태		용도 (축사 또는 부대시설)	사육품목(종)	사육규모(마릿수/군/㎡)
			공부	⑤-2 실제	자영	임차 기간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는 등록·변경등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등록정보가 말소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정보가 정정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의2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행정정보공공이용시스템
신청인의 농지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대장·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통주택가격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 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경영 및 보조금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해당 개별 교육관리시스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 사업관리시스템
축산업 등록제·허가제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농산물 안전성 조사 정보	세이프큐(SAFE Q) 정보시스템, 식품행정종합시스템
토양 환경조사 정보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농약 판매 이력 관리에 관한 정보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농지대장	농지정보시스템
농지은행사업을 통한 임대 등의 수탁 농지 정보	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 외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농업경영체 등록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체 등록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며,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 위 확인사항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통주택가격 확인서 및 보조금 수령정보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관련 법에 따른 용자·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경영주)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그 자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업경영체 정보의 등록·변경등록,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다른 법률에 따른 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신청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작성방법

1. 일반현황: 농업인과 관련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①란의 경영주인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내에서 농작물의 경작, 가축의 사육, 임업 등 농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을 말합니다.

* 신규등록 사유란에는 신규등록 사유(분리, 귀농, 상속 및 기타)를 작성합니다.

②란의 경영주 외의 농업인은 경영주를 제외한 농업인을 말합니다.

* 경영주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주민등록표에 등록(변경등록)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연속적으로 경영주의 가족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또는 경영주와 혼인한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자가 경영주의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와 등록(변경등록)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동일한 사람은 예외로 합니다)
- 경영주의 주소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같은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한 경우로서 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경영주의 주소가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가족원인 농업종사자의 영농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 「국민연금법」 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단, 18세 미만 제외)

* 경영주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인 경우 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 경영주와의 관계: 가족원인 경우 주민등록표상 관계를 자동으로 반영하며, 고용인의 경우 직접 작성합니다.

③란의 공동경영주 여부는 경영주 외의 농업인이 경영주의 배우자인 경우에만 경영주의 배우자가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2. 농지 등 및 농작물 재배: 해당 농업경영체가 경작하고 있는 모든 농지 등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④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농지정보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④-1란은 해당 지번의 실제 이용형태에 따라 논, 밭, 과수원, 초지 및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④-2란은 해당 지번의 면적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자경·임차: 공부상 면적 기준, 자경 및 임차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적

* 임차면적 및 임차기간은 농지대장 상의 임차현황, 임대차계약서(농지 외) 상의 내용을 적습니다.

- 실제경작면적: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작(농작물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공부상면적 $\geq$ 실제경작면적+휴경면적+폐경면적)

- 휴경면적: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토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토지 면적(다만, 다음 작물의 재배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폐경면적: 잡목 등의 점유, 시설물 및 묘지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으면 농작물 재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토지 면적

④-3란은 해당 지번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번호기입).

- 시설종류: ① 온실(유리), ② 온실(경질판), ③ 온실(비닐), ④ 육묘장(유리), ⑤ 육묘장(경질판), ⑥ 육묘장(비닐), ⑦ 재배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시설면적(㎡): 해당 시설의 면적을 적습니다.

④-4란은 해당 지번의 품목별 재배면적을 작성합니다.

- 재배품목: 해당 지번의 농지에 연간 재배하는 모든 재배품목을 적습니다.

- 재배면적: 노지인 경우 노지란, 시설인 경우 시설란에 적습니다.

3. 가축·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⑤란은 가축·곤충 등 사육시설의 소재지, 시설면적, 경영 형태 및 용도(축사 또는 부대시설)를 적습니다(가축·곤충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이 아닌 경우 가축·곤충 사육 농업경영체가 아님에 √ 표시를 합니다).

⑤-1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시설정보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1개의 시설이 여러 필지에 걸쳐 위치한 경우 동일한 시설번호를 적습니다.

⑤-2란은 실제 사육시설의 총 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사육시설 면적 또는 부화용 알 생산시설 면적을 적습니다.

⑤-3란은 사육하고 있는 가축 또는 곤충의 품목(종) 및 신청일 현재의 사육규모(마릿수/군/㎡)를 적습니다(다만, 부화업인 경우는 1회 평균 입란 개수를 적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임업정보-농업인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조해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7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1. 일반현황

① 경영주인 농업인	성명	국적	국내	주민등록번호			
	국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우편번호		
		마을명					
영농 이력	농업시작형태	[]전 생애 농업에 종사(신규포함) []다른 산업에서 전환(귀농포함)			농업종사형태	[]전업 []겸업	
	농업종사기간	년(농업 시작 연도 : 년)					

② 경영주 외의 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경영주와의 관계	연락처	농업시작형태	농업종사 형태	농업종사기간	③ 공동경영주 여부(O, X)
					[]전 생애 농업에 종사 []다른 산업에서 전환	[]전업 []겸업	년(농업 시작 연도 : 년)	
					[]전 생애 농업에 종사 []다른 산업에서 전환	[]전업 []겸업	년(농업 시작 연도 : 년)	

※ ③ 공동경영주 여부는 ② 경영주 외의 농업인란 중 경영주와의 관계란에 '배우자'로 기입한 경영주 외의 농업인에 한해 공동경영주 등록 희망 여부에 따라 O 또는 X로 표시합니다.

(경영주 외의 농업인에 대해서는 뒤쪽에 있는 작성방법 1. 일반현황 ②란 경영주 외의 농업인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임야 및 임업경영

④ 임야일반				④-2 임야면적(㎡) A ≥ B+C+D					④-3 시설현황		④-4 품목별 재배면적			④-5 필지 삭제 사유	④-6임야 소유자	
번호	소재지	④-1 지목	경영내용	공부(A) A ≥ 자경+임차			실제 경영 (B)	미이용		시설 종류	시설 면적 (㎡)	재배 품목	재배면적			
		공부		실제	자경	임차		기간 (... ~...)	휴경 (C)				폐경 (D)			노지 (㎡)
			[]임목생산 []임산물 재배													
			[]임목생산 []임산물 재배													
			[]임목생산 []임산물 재배													

297mm × 210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 산림경영계획 인가정보 ※ ④ 경영내용에 임목생산이 기재된 농업경영체는 작성해야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⑤-1 번호	⑤-2 명칭	⑤-3 기간	면적	⑤-4 소재지
			(㎡)	
			(㎡)	
			(㎡)	

※ ⑤-1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인가한 산림경영계획 인가번호를 기입

※ ⑤-2 산림경영계획 명칭을 작성

※ ⑤-3 인가 받은 산림경영계획 기간을 yyyy. mm. dd. 형태로 기입(예시: 2010. 10. 13. ~ 2020. 10. 12.)

※ ⑤-4 제2쪽 임야 및 임업경영 정보 중 ④ 임야일반 소재지 번호를 기입(예시: 1, 2)

4. 독립가 선정 및 임업후계자 선발

번호	성명	⑥-1 종류	⑥-2 품목	선정연도	⑥-3 선정기관

※ ⑥-1 독립가 선정(자영, 우수, 모범 및 법인으로 구분) 또는 임업후계자 선발

※ ⑥-2 독립가 선정 또는 임업후계자 선발 관련 품목을 기입

※ ⑥-3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선정기관을 기입

5. 임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번호	성명	⑦-1 교육기관	⑦-2 교육과정명	⑦-3 이수시간	⑦-4 교육기간

※ ⑦-1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산림교육원 등 교육기관을 기입

※ ⑦-2 상세한 교육과정명 기입

※ ⑦-3 이수시간(예시: 35시간 30분), ⑦-4 교육기간(예시: 2019. 5. 7. ~ 2019. 5. 17.)

6. 임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소재지	면적(㎡)	총사업비(원)	정부보조금(원)	정부융자금(원)	해당연도

7. 임산물의 생산 및 유통(작성기준: 전년도 연간) ※ 주요품목 및 재배면적이 기재된 농업경영체만 작성합니다.

(단위: ㎡, kg, 개)

⑧ 생산 및 유통	⑧-1 주요 품목		재배면적	⑧-2 생산량	⑧-3 판매량	⑧-4 판매금액(만원)	⑧-5 주요 판매처
	수실						
	버섯						
	산나물						
	약초·약용						
	수목부산물						
	관상산림식물						
	기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는 등록·변경등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등록정보가 말소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정보가 정정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의2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신청인의 임야 소재지 및 임업관련 시설 소재지의 토지대장·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 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경영 및 보조금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해당 개별 교육관리시스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임업)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 사업관리시스템
농업(임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농산물 안전성 조사 정보	세이프큐(SAFE Q) 정보시스템, 식품행정종합시스템
토양 환경조사 정보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농약 판매 이력 관리에 관한 정보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농지대장	농지정보시스템
농지은행사업을 통한 임대 등의 수탁 농지 정보	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 외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농업경영체 등록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체 등록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며,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 위 확인사항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및 보조금 수령정보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관련 법에 따른 용자·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경영주)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그 자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와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이하 "산림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청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다른 법률에 따른 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인	➔	접수	➔	검토 및 확인 산림청	➔	등록부 작성
--------------------	---	----	---	----------------	---	--------

작성방법

1. 일반현황: 농업인과 관련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 ①란의 경영주인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내에서 농작물의 경작, 가축의 사육, 임업 등 농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을 말합니다.
- ②란의 경영주 외의 농업인은 경영주를 제외한 농업인을 말합니다.
- * 경영주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주민등록표에 등록(변경등록)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경영주의 가족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또는 경영주와 혼인한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국내 체류자가 경영주의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와 등록(변경등록)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동일한 사람으로 예외로 합니다)
 - 경영주의 주소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같은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한 경우로서 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경영주의 주소가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가족원인 농업종사자의 영농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 「국민연금법」 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단, 18세 미만 제외)
 - * 경영주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인 경우 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 * 경영주와의 관계: 가족원인 경우 주민등록표상 관계를 자동으로 반영하며, 고용인의 경우 직접 작성합니다.
- ③란의 공동경영주 여부란은 경영주 외의 농업인이 경영주의 배우자인 경우에만 경영주의 배우자가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2. 임야 및 임업경영

- ④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임야정보를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 ④-2란은 해당 지번의 면적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자경·임차: 공부상 면적 기준, 자경 및 임차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적
 - * 임차면적 및 임차기간은 임대차계약서 상의 내용을 적습니다.
 - 실제경영면적: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영(임산물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공부상면적 $\geq$ 실제경영면적+휴경면적+폐경면적)
 - 휴경면적: 임산물 생산이 가능한 임야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임야 면적(다만, 다음 작물의 재배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폐경면적: 잡목 등의 점유, 시설물 및 묘지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으면 임산물 재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임야 면적
- ④-3란은 해당 지번의 시설종류와 시설규모를 작성합니다(번호기입).
- 시설종류: ① 임도, ② 운재로 및 작업로, ③ 임산물 생산시설(온실, 재배사 등), ④ 임산물 가공·건조·저장·보관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시설면적은 면적(m^2)으로 작성합니다.
- ④-4란은 해당 지번의 품목별 재배면적을 작성합니다.
- 재배품목: 해당 지번의 임야에 연간 재배하는 모든 재배품목을 적습니다.
 - 재배면적: 노지인 경우 노지란, 시설인 경우 시설란에 적습니다.
- ④-5란은 해당지번의 필지 삭제 시 삭제 일자와 삭제 사유를 작성합니다.
- * 필지 삭제 사유 구분: 매매(증여·상속 포함), 임대(자경임야 삭제), 임차종료(임차임야 삭제), 폐경 및 기타(상세 사유 기재)

7. 임산물의 생산 및 유통(작성기준: 전년도 연간)

- ⑧란은 주요 품목, 재배면적이 기재된 농업경영체만 작성하며, 전년도에 생산하여 판매한 임산물 등의 생산량, 판매량, 판매금액 및 주요 판매처를 적습니다.
- 다만, 기재된 품목이 전년도에 재배되지 않았을 경우 재배면적란에 '0'으로 기재합니다.
- ⑧-1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⑧-2란은 ⑧-1란에 기재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생산량을 적습니다.
- ⑧-3란은 ⑧-1란에 기재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판매량을 적습니다.
- ⑧-4란은 ⑧-1란에 기재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판매금액을 적습니다.
- ⑧-5란은 판매된 주요 품목의 주요 판매처를 1개만 적습니다(번호기입).
- * 주요 판매처는 ① 산림조합, ② 농협, ③ 민간가공업체, ④ 도매시장, ⑤ 직거래, ⑥ 기타(상세 내용) 중 비중이 높은 한 곳만 적습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조해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8쪽 중 제1쪽)

접수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처리기간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30일
접수일				

1. 일반현황

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			
① 법인현황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도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
	법인 소재지	본점	(마을명:)	
		분점	(마을명:)	
			(마을명:)	
주요사업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농업서비스 []관광·휴양 []그 밖의 사업 []마을법인				

② 대표자	성명	국적	국내	주민등록번호
			국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③ 구성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직책	농업인 여부	증빙서류	④ 출자규모	구 분	출자자 수(명)	출자액(만원)
							농업인		
							비농업인		
							계		

※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포함 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 등기이사(또는 업무집행자) 및 농업인 출자자

⑤ 상용근로자 수	[]근로자없음	내국인	명	외국인	명
-----------	----------	-----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 및 사료작물 재배에 이용하는 초지는 ⑥-1 실제 지목을 ‘초지’로 등록합니다.

– 21 –

3. 가축·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축산·곤충 사육 농업법인이 아님

⑦ 사육시설 현황								⑦-3 사육정보	
⑦-1 번호	사육시설 소재지	소재지 공부 면적(㎡)	시설면적(㎡)		경영 형태		용도 (축사 또는 부대시설)	사육품목 (종)	사육규모 (마릿수/군/㎡)
			공부	⑦-2 실제	자영	임차 기간 (... ~...)			

4. 농산물의 생산·유통 및 가공(작성기준: 전년도 연간)

(단위: ㎡, kg, 마릿수, 군, %, 만원)

⑧ 생산 · 유통	⑧-1 주요 품목		⑧-2 재배면적 (사육규모)	⑧-3 생산량	⑧-4 판매량	⑧-5 판매금액	⑧-6 판매처별 점유비율					⑨ 가공	품목	판매금액
	식량						정부공공비축	농협	민간도정 가공업체	직거래	기타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채소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과수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특용 약용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민간계통출하	유통업체	기타			
	축산						도매시장	산지경매	유통업체	직거래	기타			
							도매시장	산지경매	유통업체	직거래	기타			

5. 소득·자산·부채(작성기준일: 전년도 12월 31일)

(단위: 만원)

⑩ 농업소득	⑪ 농업 외 소득	⑫ 자산	⑬ 부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농업·농촌에 관한 융자·보조금 등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는 등록·변경등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등록정보가 말소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정보가 정정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의2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행정정보공통이용시스템
신청인의 농지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 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경영 및 보조금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해당개별교육관리시스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축산업 등록제·허가제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농산물 안전성 조사 정보	세유클(SAFE Q) 정보시스템, 식품행정종합시스템
토양 환경조사 정보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농약 판매 이력 관리에 관한 정보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농지대장	농지정보시스템
농지은행사업을 통한 임차 등의 수탁 농지 정보	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 외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농업경영체 등록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체 등록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며,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및 보조금 수령정보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관련 법에 따른 용자·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그 자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다른 법률에 따른 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인	➔	접수	➔	검토 및 확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등록부 작성
--------------------	---	----	---	-----------------------	---	--------

작성방법

1. 일반현황: 농업법인과 관련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①란은 법인등기부상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설립연도, 연락처 및 법인 소재지를 적습니다.

* 전화번호, 팩스 및 전자우편은 법인사무소에서 이용하는 것을 적되, 법인이 소유·이용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대표가 사용하는 것을 적습니다.

* 주요사업은 정관으로 정한 법인의 주요사업에 해당하는 []칸에 √ 표시를 하되, 중복선택이 가능합니다.

* 체험마을 등 마을단위로 농업법인을 만든 경우에는 마을법인에 √ 표시를 합니다.

②란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및 주민등록지 주소를 적습니다.

③란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영농조합법인은 대표자 포함 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등기이사(또는 업무집행자)와 농업인 출자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직책, 농업인 여부 및 증빙 서류(농업경영체 증명서·농업인 확인서)를 적습니다.

④란의 출자규모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농업인)과 준조합원(비농업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⑤란은 출자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

2. 농지 등 및 농작물 재배: 해당 농업경영체가 경작하고 있는 모든 농지 등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⑥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농지정보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⑥-1란은 해당 지번의 실제 이용형태에 따라 논, 밭, 과수원, 초지 및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⑥-2란은 해당 지번의 면적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자경·임차: 공부상 면적 기준, 자경 및 임차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적

* 임차면적 및 임차기간은 농지대장 상의 임차현황, 임대차계약서(농지 외) 상의 내용을 적습니다.

- 실제경작면적: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작(농작물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공부상면적 $\geq$ 실제경작면적+휴경면적+폐경면적)

- 휴경면적: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토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토지 면적(다만, 다음 작물의 재배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폐경면적: 잡목 등의 점유, 시설물 및 묘지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으면 농작물 재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토지 면적

⑥-3란은 해당 지번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번호기입).

- 시설종류: ① 온실(유리), ② 온실(경질판), ③ 온실(비닐), ④ 육묘장(유리), ⑤ 육묘장(경질판), ⑥ 육묘장(비닐), ⑦ 재배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시설면적(㎡): 해당 시설의 면적을 적습니다.

⑥-4란은 해당 지번의 품목별 재배면적을 작성합니다.

- 재배품목: 해당 지번의 농지에 연간 재배하는 모든 품목을 적습니다.

- 재배면적: 노지인 경우 노지란, 시설인 경우 시설란에 적습니다.

3. 가축·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⑦란은 가축·곤충 사육시설의 소재지, 소재지 공부면적, 시설면적, 경영 형태 및 용도(축사 또는 부대시설)를 적습니다(가축·곤충 사육 농업법인이 아닌 경우 가축·곤충 사육 농업법인이 아님에 √ 표시를 합니다).

⑦-1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시설정보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1개의 시설이 여러 필지에 걸쳐 위치한 경우 동일한 시설번호를 적습니다.

⑦-2란은 실제 사육시설의 총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사육시설 면적 또는 부화용 알 생산시설 면적을 적습니다.

⑦-3란은 사육하고 있는 가축 또는 곤충의 품목(종) 및 등록신청일 현재의 사육규모(마릿수/군/㎡)를 적습니다(다만, 부화업인 경우는 1회 평균 입란 개수를 적습니다).

작성방법

4. 농산물의 생산·유통 및 가공(작성기준: 전년도 연간)

㉔란은 전년도에 생산·유통한 농산물의 연간 실적을 적습니다.

㉔-1란은 전년도 생산품목, 유통·판매 등 취급 농산물의 품목, 주요 서비스 종류를 적습니다.

㉔-2란은 ㉔-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재배면적(사육규모)을 적습니다. 재배면적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㉔-3란은 ㉔-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생산량을 적습니다. 생산 실적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㉔-4란은 ㉔-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판매량을 적습니다.

㉔-5란은 ㉔-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총 판매금액을 만원 단위로 적습니다.

㉔-6란은 ㉔-5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총 판매금액 중 판매처별 점유비율을 백분율(%)로 적습니다.

㉕란은 전년도에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하여 판매한 품목의 명칭과 연간 판매금액을 만원 단위로 적습니다.

5. 소득·자산·부채(작성기준일: 전년도 12월 31일)

㉖란은 전년도의 농업소득 총액을 적습니다.

㉖-1란은 아래의 전년도 농업 외 소득 금액의 연간 총액을 적습니다.

- 어업, 농산물 가공업, 농업서비스, 제조업 등 기타 산업 종사를 통해 얻은 소득 금액
- 농업 외 산업의 종사로 지급받은 임금 및 다른 농가에 고용되어 지급받은 소득 금액
- 임대수입(농지, 대지, 시설물, 대농구 등), 이자·배당수입, 유가증권 매매차익 등의 금액
- 농업보조금, 실업수당, 산업재해보험금, 기초연금, 같이 살지 않는 가족 또는 친인척 등 다른 가구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용돈·생활비 등
- 경조사로 인한 수입(축의금, 조의금 등), 퇴직일시금, 사고보상금, 이주민 주거대책비 일시금, 세금 환급금, 사례금 등 비정기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다른 가구 등으로부터 얻은 소득금액

㉖-2란은 아래의 자산 총액을 적습니다.

- 토지, 건물, 기계·기구 및 비품 등 고정자산의 금액
- 현금, 예금, 저축성 보험금 등 금융자산의 금액
- 미처분 농축산물, 미사용 구입자재 등 재고자산의 금액

㉖-3란은 아래의 부채 총액을 적습니다.

- 생산성 자금 중 영농투자 확대(경작지, 건물, 기계, 비료, 농약, 동식물, 사료 구입 등)를 위해 차입한 부채의 금액
- 가계운영을 위한 생산성 자금(주거용 건물), 문화용품비, 관혼상제비, 의료비, 교육비, 기타 생활비 등 가계운영을 위해 차입한 부채의 금액
- 생산성 자금 중 겸업활동(토지·건물·기계 구입, 그 밖의 겸업활동을 위한 지출)을 위해 차입한 부채의 금액
- 토지, 건물 등을 빌려주고 받은 임대차보증금(전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재산증식을 위한 생산성 자금(겸업 및 영농활동과 관계없이 재산증식을 위한 토지, 임야 등의 부동산 구입)을 위한 부채, 채무 보증으로 대신 상환하는 부채 등의 금액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임업정보-농업법인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조해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9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1. 일반현황

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			
① 법인현황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도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
	법인 소재지	본점	(마을명:)	
		분점	(마을명:)	
(마을명:)				
주요사업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농업서비스 []관광·휴양 []그 밖의 사업 []마을법인				

② 대표자	성명	국적	국내	주민등록번호	
	국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③ 구성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직책	농업인 여부	증빙서류	④ 출자규모	구 분	출자자 수(명)	출자액(만원)
							농업인		
							비농업인		
							계		

※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포함 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 등기이사(또는 업무집행자) 및 농업인 출자자

⑤ 상용근로자 수	[]근로자 없음	내국인	명	외국인	명
-----------	-----------	-----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임야 및 임업경영

⑥ 임야일반				⑥-2 임야면적(m ²) A ≥ B+C+D					⑥-3 시설현황		⑥-4 품목별 재배면적			⑥-5 필지 삭제 사유	⑥-6 임야 소유자		
번호	소재지	⑥-1 지목		경영내용	공부(A) A ≥ 자경+임차			실제 경영 (B)	미이용		시설 종류	시설 면적 (m ²)	재배 품목			재배면적	
		공부	실제		자경	임차	기간 (... ~...)		휴경 (C)	폐경 (D)						노지 (m ²)	시설 (m ²)
				[]임목생산 []임산물 재배													
				[]임목생산 []임산물 재배													
				[]임목생산 []임산물 재배													

297mm×210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3. 산림경영계획 인가정보 ※ ⑥ 경영내용에 임목생산이 기재된 농업경영체는 작성해야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⑦-1 번호	⑦-2 명칭	⑦-3 기간	면적	⑦-4 소재지
			(㎡)	
			(㎡)	
			(㎡)	

※ ⑦-1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인가한 산림경영계획 인가번호를 기입

※ ⑦-2 산림경영계획 명칭을 작성

※ ⑦-3 인가 받은 산림경영계획 기간을 yyyy. mm. dd. 형태로 기입(예시: 2010. 10. 13. ~ 2020. 10. 12.)

※ ⑦-4 제2쪽 임야 및 임업경영 정보 중 ⑥ 임야일반 소재지 번호를 기입(예시: 1, 2)

4. 독립가 선정 및 임업후계자 선발

번호	성명	⑧-1 종류	⑧-2 품목	선정연도	⑧-3 선정기관

※ ⑧-1 독립가 선정(자영, 우수, 모범 및 법인으로 구분) 또는 임업후계자 선발

※ ⑧-2 독립가 선정 또는 임업후계자 선발 관련 품목을 기입

※ ⑧-3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선정기관을 기입

5. 임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번호	성명	⑨-1 교육기관	⑨-2 교육과정명	⑨-3 이수시간	⑨-4 교육기간

※ ⑨-1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산림교육원 등 교육기관을 기입

※ ⑨-2 상세한 교육과정명 기입

※ ⑨-3 이수시간(예시: 35시간 30분), ⑨-4 교육기간(예시: 2017. 5. 7. ~ 2017. 5. 17.)

6. 임업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소재지	면적(㎡)	총사업비(원)	정부보조금(원)	정부용자금(원)	해당연도

7. 임산물의 생산·유통 및 가공(작성기준: 전년도 연간)

(단위: ㎡, kg, %, 만원)

⑩ 생산 · 유통	⑩-1 주요 품목		⑩-2 재배면적	⑩-3 생산량	⑩-4 판매량	⑩-5 판매금액	⑩-6 판매처별 점유비율					⑪ 가공	품 목	판매금액
	수실						도매시장	농협·산림조합 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버섯						도매시장	농협·산림조합 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산나물						도매시장	농협·산림조합 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약초· 약용						도매시장	농협·산림조합 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수목 부산물						도매시장	농협·산림조합 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관상 산림 식물						도매시장	농협·산림조합 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기타						도매시장	농협·산림조합 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8. 소득·자산·부채(작성기준일: 전년도 12월 31일)

(단위: 만원)

⑫ 농업소득	⑬ 농업 외 소득	⑭ 자산	⑮ 부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는 등록·변경등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등록정보가 말소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정보가 정정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의2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행정정보공공이용시스템
신청인의 임야 소재지 및 임업관련 시설 소재지의 토지대장·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 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임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 iedu), 해당 개별 교육관리시스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임업)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 사업관리시스템
농업(임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농산물 안전성 조사 정보	세원큐(SAFE Q) 정보시스템, 식품행정종합시스템
토양 환경조사 정보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농약 판매 이력 관리에 관한 정보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농지대장	농지정보시스템
농지은행사업을 통한 임차 등의 수탁 농지 정보	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 외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농업경영체 등록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며,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및 보조금 수령정보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관련 법에 따른 용자·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 및 그 자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와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이하 "산림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 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으로부터 농업경영 정보의 등록·변경등록,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청은 등록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다른 법률에 따른 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신청인				산림청		

작성방법

1. 일반현황: 농업법인과 관련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 ①란은 법인등기부상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설립연도, 연락처 및 법인 소재지를 적습니다.
- * 전화번호, 팩스 및 전자우편은 법인사무소에서 이용하는 것을 적되, 법인이 소유·이용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대표가 사용하는 것을 적습니다.
 - * 주요사업은 정관으로 정한 법인의 주요사업에 해당하는 []칸에 √ 표시를 하되, 중복선택이 가능합니다.
 - * 체험마을 등 마을단위로 농업법인을 만든 경우에는 마을법인에 √ 표시를 합니다.
- ②란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및 주민등록지 주소를 적습니다.
- ③란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영농조합법인은 대표자 포함 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등기이사(업무집행자)와 농업인 출자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직책, 농업인 여부 및 증빙 서류(농업경영체 증명서·농업인 확인서·고용계약서)를 적습니다.
- ④란의 출자규모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농업인)과 준조합원(비농업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⑤란은 출자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

2. 임야 및 임업경영

- ⑥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임야정보를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 ⑥-2란은 해당 지번의 면적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자경·임차: 공부상 면적 기준, 자경 및 임차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적
 - * 임차면적 및 임차기간은 임대차계약서 상의 내용을 적습니다.
 - 실제경영면적: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영(임산물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공부상면적 ≥ 실제경영면적+휴경면적+폐경면적)
 - 휴경면적: 임산물 생산이 가능한 임야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임야 면적(다만, 다음 작물의 재배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폐경면적: 잡목 등의 점유, 시설물 및 묘지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으면 임산물 재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임야 면적
- ⑥-3란은 해당 지번의 시설종류와 시설규모를 작성합니다(번호기입).
- 시설종류: ① 임도, ② 운재로 및 작업로, ③ 임산물 생산시설(온실, 재배사 등), ④ 임산물 가공·건조·저장·보관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시설면적은 면적(㎡)으로 작성합니다.
- ⑥-4란은 해당 지번의 품목별 재배면적을 작성합니다.
- 재배품목: 해당 지번의 임야에 연간 재배하는 모든 재배품목을 적습니다.
 - 재배면적: 노지인 경우 노지란, 시설인 경우 시설란에 적습니다.
- ⑥-5란은 해당지번의 필지 삭제 시 삭제 일자와 삭제 사유를 작성합니다.
- * 필지 삭제 사유 구분: 매매(증여·상속 포함), 임대(자경임야 삭제), 임차종료(임차임야 삭제), 폐경 및 기타(상세 사유 기재)

7. 임산물의 생산·유통 및 가공(작성기준: 전년도 연간)

- ⑩란은 전년도에 생산·유통한 임산물의 실적입니다.
- ⑩-1란은 전년도 생산품목, 유통·판매 등 취급 임산물의 품목, 주요 서비스 종류를 적습니다.
- ⑩-2란은 ⑩-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재배면적을 적습니다. 재배면적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⑩-3란은 ⑩-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생산량을 적습니다. 생산 실적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⑩-4란은 ⑩-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판매량을 적습니다.
- ⑩-5란은 ⑩-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총 판매금액을 만원 단위로 적습니다.
- ⑩-6란은 ⑩-5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총 판매금액 중 판매처별 점유비율을 백분율(%)로 적습니다.
- ⑪란은 전년도에 임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하여 판매한 품목의 명칭과 연간 판매금액을 만원 단위로 적습니다.

작성방법

8. 소득·자산·부채(작성기준일: 전년도 12월 31일)

⑫란은 전년도의 농업소득 총액을 적습니다.

⑬란은 아래의 전년도 농업 외 소득 금액의 연간 총액을 적습니다.

- 어업, 농산물 가공업, 농업서비스, 제조업 등 기타 산업 종사를 통해 얻은 소득 금액
- 농업 외 산업의 종사로 지급받은 임금 및 다른 농가에 고용되어 지급받은 소득 금액
- 임대수입(농지, 대지, 시설물, 대농구 등), 이자·배당수입, 유가증권 매매차익 등의 금액
- 농업보조금, 실업수당, 산업재해보험금, 기초연금, 같이 살지 않는 가족 또는 친인척 등 다른 가구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용돈·생활비 등
- 경조사로 인한 수입(축의금, 조의금 등), 퇴직일시금, 사고보상금, 이주민 주거대책비 일시금, 세금 환급금, 사례금 등 비정기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다른 가구 등으로부터 얻은 소득 금액

⑭란은 아래의 자산 총액을 적습니다.

- 토지, 건물, 기계·기구 및 비품 등 고정자산의 금액
- 현금, 예금, 저축성 보험금 등 금융자산의 금액
- 미처분 농축산물, 미사용 구입자재 등 재고자산의 금액

⑮란은 아래의 부채 총액을 적습니다.

- 생산성 자금 중 영농투자 확대(경작지, 건물, 기계, 비료, 농약, 동식물, 사료 구입 등)를 위해 차입한 부채의 금액
- 가계운영을 위한 생산성 자금(주거용 건물), 문화용품비, 관혼상제비, 의료비, 교육비, 기타 생활비 등 가계운영을 위해 차입한 부채의 금액
- 생산성 자금 중 겸업활동(토지·건물·기계 구입, 그 밖의 겸업활동을 위한 지출)을 위해 차입한 부채의 금액
- 토지, 건물 등을 빌려주고 받은 임대차보증금(전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재산증식을 위한 생산성 자금(겸업 및 영농활동과 관계없이 재산증식을 위한 토지, 임야 등의 부동산 구입)을 위한 부채, 채무 보증으로 대신 상환하는 부채 등의 금액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인용)

※ 제5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5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지(신고거소지) 주소

1. 일반현황

①경영주인 어업인	성명	사업장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②주소	주민등록지 (신고거소지)	어촌계 이름:
		실제 거주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	
	③어업인 해당 여부	[]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 1년 중 60일 이상 종사	
	④영어 이력	종사기간 년 (어업 시작 연도 년) 종사형태 [] 전업 [] 겸업	

⑤경영주 외 어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⑥경영주와의 관계	⑦구분	⑧공동경영주 여부 (0, X)
				[] 어업자 [] 어업종사자	
				[] 어업자 [] 어업종사자	
				[] 어업자 [] 어업종사자	
				[] 어업자 [] 어업종사자	

⑨어업현황 및 시설	어업 구분		어업 현황(품종 · 종류 등)	시설	
	해수면어업	정치망어업	어업종류:	구획면적(ha):	
		양식업	어류:	양식면적(ha):	
			패류:	양식면적(ha):	
			해조류:	양식면적(ha):	
			기타:	양식면적(ha):	
		마을어업	대표품종:	면허면적(ha):	
		어선 어업	근해 어업	어업종류:	어선 수(척):
			연안 어업	어업종류:	어선 수(척):
		구획어업	어업종류:	어선 수(척):	
	신고어업	어업종류:			
	내수면어업	양식업	어류:	양식면적(ha):	
			갑각류:	양식면적(ha):	
			기타:	양식면적(ha):	
		허가어업	어업종류:	어선 수(척):	
기타어업	신고어업	어업종류:			
	관상어양식	대표품종:	생산면적(㎡):		
소금제조업		생산면적(ha):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양식시설 현황

면허 · 허가 번호	어장 소재지				⑩경영 형태 (자영·임차)	⑪면허·허가증 상 어장면적(ha)	⑫실제 사용 중인 어장면적(ha)			
	시·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해상 가두리	육상 수조식	축제식	기타

3. 어류양식 생산규모

면허 · 허가 번호	⑬양식어종	⑭현 양식량(kg)	⑮지난해 생산 규모		⑯유통정보 (비율, %)	
			생산량(kg)	생산금액(만원)	위·공판장 판매	기타

4. 그 밖의 양식 생산규모

면허 · 허가 번호	⑰양식품종	⑱현 양식량(kg)	⑲지난해 생산 규모		⑳유통정보 (비율, %)	
			생산량(kg)	생산금액(만원)	위·공판장 판매	기타

5. 어선어업 생산규모

선명	㉑어선 선적지		㉒동력구분	㉓어업구분	㉔어선톤수	㉕주요어종	㉖지난해 생산 규모		㉗유통정보 (비율, %)	
	시·도	시·군					생산량 (톤)	생산금액 (만원)	위·공판장 판매	기타

6. 그 밖의 어업(정치망어업, 구획어업, 신고어업, 내수면어업, 관상어양식 및 소금제조업) 생산규모

면허·허가·신고·번호	㉔대표품종 또는 대표어종	㉔지난해 생산 규모		㉔유통정보(비율, %)	
		생산량(kg)	생산금액(만원)	위·공판장 판매	기타

7. 어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성명	㉔교육기관	㉔교육과정명	㉔교육기간

8. 후계어업경영인 선정

성명	㉔종류	㉔품종	㉔선정연도

9. 어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

㉔지원받은 정책사업명	㉔면적(㎡)	㉔톤	㉔총사업비(원)	정부보조금(원)	정부융자금(원)	해당연도

10. 유기식품의 인증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정보

신청자	㉔인증종류	㉔소재지	㉔인증면적(㎡)	대표품종	㉔인증번호

11.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작성 기준일: 전년도 12월 31일)

㉔어업 소득(만원)	㉔어업 외 소득(만원)	㉔자산(만원)	㉔부채(만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어업경영정보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는 등록·변경등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등록정보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정보가 정정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의2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공동경영주 신청 시 작성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신청인의 어업현황과 관련한 소재지의 토지대장·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어선, 어업인허가, 양식업 및 후계어업경영인 관련 정보	수산정보시스템
수산물위판정보(판매, 중도매인, 위탁인 및 정산 관리 등) 관련 정보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
유기식품의 인증 정보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정보	수산물검사정보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및 보조금 수령정보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각종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경영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경영주 외 어업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경영주 외 어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어업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의 수산행정지원, 용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어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수산보조금 정보, 그 밖의 행정정보를 문자 메시지 및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산업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 하는데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 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 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등록말소 후에도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용자·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행정지원 및 안내 서비스 제공, 다른 법률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경영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경영주 외 어업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경영주 외 어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어업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어업경영체와 등록정보의 수정 등을 하지 않은 어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소득 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신청서에 작성한 어업경영정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	---	-----	---	---------	---	--------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작성방법

- ①란의 경영주인 어업인은 경영과 의사결정 주체로 일반적으로 어업 허가·면허·신고어업을 취득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임차인을 말합니다.
* 성명과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 및 전자우편을 적고, 사업장명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②란의 주소는 주민등록지(외국인인 경우에는 신고 거주지)를 기준으로 적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주소를 적습니다.
- ③란은 어업인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모두 []칸에 √ 표시를 합니다.
- ④란의 어업 시작 연도는 어업 면허·허가·신고 중 최초로 시작한 어업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 ⑤란은 경영주를 제외한 어업인을 적습니다.
* 어업인의 요건은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⑥란은 배우자, 부, 모, 자, 자부, 사위, 시모, 형제 또는 자매 등으로 적으며,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작성합니다.
- ⑦란은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제14호에 따라 해당하는 []칸에 √ 표시를 합니다.
- ⑧란은 ⑤ 경영주 외의 어업인란 중 ⑥ 경영주와의 관계란에 '배우자'로 기입한 경영주 외 어업인이 공동경영주로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O, 희망하지 않는 경우 X로 표시합니다.
- ⑨란은 어업현황 및 시설에 대하여 해당되는 모든 사항을 전부 적습니다.
 - 1) 정치망어업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정치망어업의 종류 및 구획면적을 적습니다.
 - 2) 양식업(해수면 및 내수면)과 마을어업은 대표품종(아래 ㉔란 및 ㉕란의 작성 예시에 따른 대표품종을 말합니다)과 어장면적(양식면적 또는 면허면적)을 적습니다.
 - 3) 해수면 어선어업 중 근해어업은 어업종류(「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의 종류)와 어선 수를 적습니다.
 - 4) 해수면 어선어업 중 연안어업은 어업종류(「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안어업의 종류)와 어선 수를 적습니다.
 - 5) 해수면 중 구획어업은 어업종류(「수산업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구획어업의 종류)와 어선 수를 적습니다.
 - 6) 해수면 신고어업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종류를 적고, 내수면 신고어업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 7) 내수면 허가어업은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어업의 종류 및 어선 수를 적습니다.
 - 8) 관상어양식은 대표품종과 생산면적을 적습니다.
 - 9) 소금제조업은 생산면적을 적습니다.
- ⑩란은 양식업의 경영 형태를 자영 또는 임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자영 : 본인 소유의 양식장에서 수산물을 양식하는 형태
* 다만, 배우자 등 동일 세대 구성원이 소유한 양식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자영"으로 적습니다.
 - 임차 : 타인 소유의 어업권을 임차하여 수산물을 양식하는 형태
- ⑪란은 해당 양식업 면허·허가증 상의 어장면적을 적습니다.
- ⑫란은 실제 양식에 사용하고 있는 어장면적을 적습니다.
- ⑬, ⑰란은 양식하는 어종 또는 품종을 적습니다. 이 경우 아래 ㉔란 및 ㉕란의 작성 예시에 따라 적습니다.
- ⑭, ⑱, ㉔, ㉕란의 생산량 및 생산금액은 지난해 1년간(1. 1. ~ 12. 31.) 생산한 것을 적습니다.
- ⑯, ㉒, ㉓, ㉔, ㉕란은 위판·공판장을 통해 위탁 판매한 비율과 그 밖에 수집상 또는 직거래 등으로 판매한 비율을 적습니다.
- ㉑란은 어선이 등록된 선적지를 적습니다.
- ㉒란은 동력 또는 무동력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㉓란은 연안, 근해, 정치망 또는 내수면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㉔란은 선박원부에 등재된 톤수를 적습니다.
- ㉕란의 주요어종, ㉖란의 대표품종 또는 대표어종은 아래의 작성 예시에 따라 적습니다.
 - 작성 예시
 - 가. 양식업
 - 패류: 전복, 굴, 바지락, 꼬막, 홍합, 피조개
 - 해조류: 김, 미역, 다시마, 톳, 명게, 미더덕
 - 어류: 새우, 도미, 넙치, 볼락, 복어, 전어
 - 나. 어선어업: 가자미, 갈치, 고등어, 꽁치, 넙치, 농어, 돔, 대구, 멸치 등
 - 다. 내수면어업: 장어, 쏘가리, 잉어, 송어, 다슬기, 미꾸라지, 자라
- ㉖란은 교육을 시행한 기관명을 적습니다.
- ㉗란은 이수한 어업경영 관련 직업·전문 교육과정명을 적습니다.
- ㉘란은 교육 받은 기간을 연월일로 표시합니다.(예: 2016. 3. 8. ~ 2016. 5. 15.)
- ㉙란은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 당시 전업경영인 또는 선도우수경영인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 그 종류를 적습니다.
- ㉚란은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 당시 대표적인 품종을 적습니다.
- ㉛란은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연도를 적습니다.
- ㉜란은 지원받은 수산사업 정책명을 적습니다.
- ㉝란은 정책자금과 관련된 양식장 등이 있을 경우 면적을 적습니다.
- ㉞란은 어선관련 지원 사업 등의 어선톤수를 적습니다.
- ㉟란은 자기부담금, 정부보조금 및 정부융자금을 포함한 총사업비를 적습니다.
- ㊱란은 유기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적습니다.
- ㊲란은 인증과 관련된 양식장 및 시설 등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㊳란은 인증과 관련된 양식장 등의 인증면적을 적습니다.
- ㊴란은 인증서상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 ㊵란은 지난해 1년간 자기의 어업 소득과 세대원 중 어업인의 어업 소득을 합산한 것을 적습니다.
 - * 어업 소득: 어업경영 결과로 얻은 총수익
- ㊶란은 지난해 1년간 자기의 어업 소득 외 소득과 세대원 중 어업인의 어업 외 소득을 합산한 것을 적습니다.
 - * 어업 외 소득: 급여 소득, 임대료, 배당금, 이자 및 유가증권 매매차익 등
- ㊷란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자기의 자산과 세대원 중 어업인의 자산을 합산한 것을 적습니다.
 - * 자산: 토지, 건물, 선박, 기계·기구, 금융자산, 미처분 수산물, 사용중인 어업용 자재 및 미사용 구입자재 등 총액
- ㊸란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자기의 부채와 세대원 중 어업인의 부채를 합산한 것을 적습니다.
 - * 부채: 차입금, 미지급금 및 선수금 등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법인용)

※ 제5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5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지(신고거소지) 주소

1. 일반현황

①형태	[]영어로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
-----	--

②법인 현황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
	설립연도		
	주사무소 소재지		

③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④구성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책	어업인 여부	증빙서류

조합원, 사원, 주주의 인원수	[]조합원: 명, []준조합원: 명, []사원: 명, []주주: 명
---------------------	---

⑤어업현황 및 시설	어업 구분		어업 현황(품종·종류 등)	시설
	해수면어업	정치망어업		어업종류: 구획면적(ha):
		양식업	어류:	양식면적(ha):
			패류:	양식면적(ha):
			해조류:	양식면적(ha):
			기타:	양식면적(ha):
		마을어업		대표품종: 면허면적(ha):
		어선 어업	근해 어업	어업종류: 어선 수(척):
			연안 어업	어업종류: 어선 수(척):
		구획어업		어업종류: 어선 수(척):
		신고어업		어업종류:
	내수면어업	양식업	어류:	양식면적(ha):
			갑각류:	양식면적(ha):
			기타:	양식면적(ha):
		허가어업		어업종류: 어선 수(척):
		신고어업		어업종류:
	기타어업	관상어양식		대표품종: 생산면적(㎡):
		소금제조업		생산면적(ha):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양식시설 현황

면허 · 허가 번호	어장 소재지				⑥경영 형태 (자영·임차)	⑦면허·허가증 상 어장면적(ha)	⑧실제 사용 중인 어장면적(ha)			
	시·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해상 가두 리	육상 수조 식	축제식	기타

3. 어류양식 생산규모

면허 · 허가 번호	⑨양식어종	⑩현 양식량(kg)	⑪지난해 생산 규모		⑫유통정보(비율, %)	
			생산량(kg)	생산금액(만원)	위·공판장 판매	기타

4. 그 밖의 양식 생산규모

면허 · 허가 번호	⑬양식품종	⑭현 양식량(kg)	⑮지난해 생산 규모		⑯유통정보(비율, %)	
			생산량(kg)	생산금액(만원)	위·공판장 판매	기타

5. 어선어업 생산규모

선명	⑰어선 선적지		⑱동력구분	⑲어업구분	⑳어선톤수	㉑주요어종	㉒지난해 생산 규모		㉓유통정보 (비율, %)	
	시·도	시·군					생산량 (톤)	생산금액 (만원)	위·공판장 판매	기타

6. 그 밖의 어업(정치망어업, 구획어업, 신고어업, 내수면어업, 관상어양식 및 소금제조업) 생산규모

면허 · 허가 · 신고 번호	㉔대표품종 또는 대표어종	㉕지난해 생산 규모		㉖유통정보(비율, %)	
		생산량(kg)	생산금액(만원)	위·공판장 판매	기타

7. 어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㉗성명	㉘교육기관	㉙교육과정명	㉚교육기간

8. 어업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

㉛지원받은 정책사업명	㉜면적(㎡)	㉝톤	㉞총사업비(원)	정부보조금(원)	정부용자금(원)	해당연도

9. 유기식품의 인증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정보

신청자	㉟인증종류	㊱소재지	㊲인증면적(㎡)	대표품종	㊳인증번호

10.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작성 기준일: 전년도 12월 31일)

㊴어업 소득(만원)	㊵어업 외 소득(만원)	㊶자산(만원)	㊷부채(만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어업경영정보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는 등록·변경등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등록정보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정보가 정정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의2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공공이용시스템
신청인의 어업현황과 관련한 소재지의 토지대장·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어선, 어업인허가 및 양식업 관련 정보	수산정보시스템
수산물위판정보(판매, 중도매인, 위탁인 및 정산 관리 등) 관련 정보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
유기식품의 인증 정보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정보	수산물검사정보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및 보조금 수령정보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각종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의 수산행정지원, 융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어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수산보조금 정보, 그 밖의 행정정보를 문자 메시지 및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산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 하는데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 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 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등록말소 후에도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행정지원 및 안내 서비스 제공, 다른 법률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어업경영체와 등록정보의 수정 등을 하지 않은 어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소득 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신청서에 작성한 어업경영정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	---	-----	---	---------	---	--------	---	-------------------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작성방법

- ①란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 형태에 해당되는 []칸에 √ 표시를 합니다.
- ②란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및 법인 설립연도를 적습니다.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 및 전자우편은 법인사무소에서 이용하는 것을 적되, 법인이 소유·이용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가 사용하는 것을 적습니다.
- ③란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지 주소를 적습니다.
- ④란은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 어업인 5인 이상, 어업회사법인은 등기이사와 어업인 출자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직책, 어업인 여부 및 증빙서류(어업경영체 등록증명·어업인확인서·고용계약서)를 적습니다.
 - * 해당 법인의 조합원(또는 사원·주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조합원 명부 등)를 첨부합니다.
- ⑤란은 어업현황 및 시설에 대하여 해당되는 모든 사항을 전부 적습니다.
 - 1) 정치망어업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정치망어업의 종류 및 구획면적을 적습니다.
 - 2) 양식업(해수면 및 내수면)과 마을어업은 대표품종(아래 ㉔란 및 ㉔란의 작성 예시에 따른 대표품종을 말합니다)과 어장면적(양식면적 또는 면허면적)을 적습니다.
 - 3) 해수면 어선어업 중 근해어업은 어업종류(「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의 종류)와 어선 수를 적습니다.
 - 4) 해수면 어선어업 중 연안어업은 어업종류(「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안어업의 종류)와 어선 수를 적습니다.
 - 5) 해수면 중 구획어업은 어업종류(「수산업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구획어업의 종류)와 어선 수를 적습니다.
 - 6) 해수면 신고어업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종류를 적고, 내수면 신고어업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 7) 내수면 허가어업은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어업의 종류 및 어선 수를 적습니다.
 - 8) 관상어양식은 대표품종과 생산면적을 적습니다.
 - 9) 소금제조업은 생산면적을 적습니다.
- ⑥란은 양식업의 경영 형태를 자영 또는 임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자영 : 본인 소유의 양식장에서 수산물을 양식하는 형태
 - 임차 : 타인 소유의 어업권을 임차하여 수산물을 양식하는 형태
- ⑦란은 해당 양식업 면허·허가증 상의 어장면적을 적습니다.
- ⑧란은 실제 양식에 사용하고 있는 어장면적을 적습니다.
- ⑨란은 양식하는 어종을 적습니다. 이 경우 아래 ㉔란 및 ㉔란의 작성 예시에 따라 적습니다.
- ⑩, ⑭란은 등록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양식량을 적습니다.
- ⑪, ⑮, ⑯, ㉔, ㉔란의 생산량 및 생산금액은 지난해 1년간(1. 1. ~ 12. 31.) 생산한 것을 적습니다.
- ⑫, ⑮, ㉔, ㉔란은 위탁·공판장을 통해 위탁 판매한 비율과 그 외 수집상, 직거래 등으로 판매한 비율을 적습니다.
- ⑬란은 양식하는 품종을 적습니다.
- ⑰란은 어선이 등록된 선적지를 적습니다.
- ⑱란은 동력 또는 무동력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⑲란은 연안, 근해, 정치망 또는 내수면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㉔란은 선박원부에 등재된 톤수를 적습니다.
- ㉔란의 주요어종, ㉔란의 대표품종 또는 대표어종은 아래의 작성 예시에 따라 적습니다.
 - 작성 예시
 - 가. 양식업
 - 패류: 전복, 굴, 바지락, 고막, 홍합, 피조개
 - 해조류: 김, 미역, 다시마, 톳, 우렁쟁이, 미더덕
 - 어류: 새우, 돔, 넙치, 볼락, 복어, 전어
 - 나. 어선어업: 가자미, 갈치, 고등어, 꽁치, 넙치, 농어, 돔, 대구, 멸치 등
 - 다. 내수면어업: 장어, 쏘가리, 잉어, 송어, 다슬기, 미꾸라지, 자라
- ㉔란은 법인의 대표자, 조합원, 사원 또는 주주가 법인명으로 교육을 받은 경우 그 이수자의 이름을 적습니다.
- ㉔란은 교육을 시행한 기관명을 적습니다.
- ㉔란은 이수한 어업경영 관련 직업·전문 교육과정명을 적습니다.
- ㉔란은 교육 받은 기간을 연월일로 표시합니다.(예: 2016. 3. 8. ~ 2016. 5. 15.)
- ㉔란은 지원받은 수산사업 정책명을 적습니다.
- ㉔란은 정책자금과 관련된 양식장 등이 있을 경우 그 면적을 적습니다.
- ㉔란은 어선관련 지원 사업 등의 어선톤수를 적습니다.
- ㉔란은 자기부담금, 정부보조금 및 정부융자금을 포함한 총사업비를 적습니다.
- ㉔란은 유기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적습니다.
- ㉔란은 인증과 관련된 양식장 및 시설 등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㉔란은 인증과 관련된 양식장 등의 인증면적을 적습니다.
- ㉔란은 인증서상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 ㉔, ㉔란은 지난해 1년간 법인의 어업 소득 및 어업 외 소득을 각각 적습니다.
 - * 어업 소득: 어업경영 결과로 얻은 총수익, 어업 외 소득: 겸업소득, 임대료, 배당금, 이자 및 유가증권 매매차익 등
- ㉔란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법인의 자산을 적습니다.
 - * 자산: 토지, 건물, 선박, 기계·기구, 금융자산, 미처분 수산물, 사용중인 어업용 자재 및 미사용 구입자재 등의 총액
- ㉔란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법인의 부채를 적습니다.
 - * 부채: 차입금, 미지급금 및 선수금 등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30일
			※ 다만, 보조금 신청을 수반하는 경우	90일

대상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법인명·대표자명)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제출 증명 자료				

변경신청 내용	
기존 등록 내용	변경신청 내용

※ 기존에 등록한 사항(왼쪽란)에 대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변경신청 내용(오른쪽란)에 기입합니다.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휴대전화번호)	경영주 또는 법인과 관계
	주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는 등록·변경등록 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등록정보가 말소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정보가 정정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의2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유의사항
1. 신청인은 변경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 자료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은 경영주 또는 법인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본 등)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신청인의 농지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대장·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 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경영 및 보조금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해당 개별 교육관리시스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 사업관리시스템
축산업 등록제·허가제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에 관한 정보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세유크(SAFE Q) 정보시스템, 식품행정종합시스템
농산물 안전성 조사 정보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토양 환경조사 정보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농약 판매 이력 관리에 관한 정보	농지정보시스템
농지대장	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
농지은행사업을 통한 임대 등의 수탁 농지 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 외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농업경영체 등록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체 등록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며,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하는 데 동의합니다.

- ※ 위 확인사항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및 보조금 수령정보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관련 법에 따라 용자·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경영주 또는 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경영주 외 농업인 또는 법인 조합원·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또는 법인 조합원·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그 자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용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농업·농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의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농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용자·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다른 법률에 따른 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경영주 또는 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경영주 외 농업인 또는 법인 조합원·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또는 법인 조합원·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	---	----	---	---------	---	--------

신청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임업정보용)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대상 농업경영체	경영체 등록번호	
	성명(법인명·대표자명)	
제출 증명 자료		
변경신청 내용		
기존 등록 내용		변경신청 내용
※ 기존에 등록한 사항(왼쪽란)에 대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변경신청 내용(오른쪽란)'에 기입합니다.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휴대전화번호)	경영주 또는 법인과의 관계
	주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등록된 농업경영체 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는 등록·변경등록 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등록정보가 말소됩니다.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정보가 정정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의2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신청인은 변경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 자료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은 경영주 또는 법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본 등)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신청인의 농업현황과 관련한 소재지의 토지대장·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통주택 가격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 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임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해당 개별 교육관리시스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임업)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 사업관리시스템
농업(임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인증관리시스템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세요큐(SAFE Q) 정보시스템, 식품행정종합시스템
농산물 안전성 조사 정보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토양 환경조사 정보	동약안전정보시스템
농약 판매 이력 관리에 관한 정보	농지정보시스템
농지대장	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
농지은행사업을 통한 임대 등의 수탁 농지 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 외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농업경영체 등록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체 등록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며,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하는 데 동의합니다.

- ※ 위 확인사항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및 보조금 수령정보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관련 법에 따른 용자·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그 자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와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이하 "산림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용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농업·농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의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농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청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용자·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다른 법률에 따른 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	---	----	---	---------	---	--------

신청인

산림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대상 경영체	경영체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법인명·대표자명)	
	주소	
제출 증명자료		
변경신청 내용		
기존 등록 내용		변경신청 내용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경영주 또는 법인과 관계
	주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농업경영체정보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체정보는 등록·변경등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등록정보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정보가 정정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의2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지방해양수산청 귀하

유의사항

- 신청인은 필요 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경영주 또는 법인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본 등)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행정정보공공이용시스템
신청인의 어업현황과 관련한 소재지의 토지대장·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어선, 어업인허가, 양식업 및 후계어업경영인 관련 정보	수산정보시스템
수산물유통정보(판매, 중도매인, 위탁인 및 정산 관리 등) 관련 정보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
유기식품의 인증 정보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정보	수산물검사정보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및 보조금 수령정보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각종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경영주 또는 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어업인 또는 법인 조합원·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경영주 외 어업인 또는 법인 조합원·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어업인 또는 법인 조합원·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어업인 또는 법인 조합원·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어업경영체와 등록정보의 수정 등을 하지 않은 어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소득 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신청서에 작성한 어업경영정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제 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말소) 통지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년 월 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정정, 말소)했음을 통지합니다.

당사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처분결과 및 사유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문의전화:)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

직인

공고 제 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말소) 공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정정, 말소)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성명 (법인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처분결과 및 사유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 (정정, 말소)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제3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		
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		
농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농업		-----		
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		-----		
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u>다</u>		----- <u>국립</u>		
<u>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u>		<u>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u>		
<u>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경</u>		<u>(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u>		
<u>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u>		<u>한다. 이하 같다)---. -----</u>		
<u>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의2서</u>		-----		
<u>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u>		-----		
<u>등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u>		-----		
<u>출하여야 한다.</u>		-----.		
1. <u>영 별표 1 제5호 각 목에 따</u>		<삭 제>		
<u>른 보조금 등의 신청(이하 “보</u>				
<u>조금등의 신청”이라 한다)을</u>				
<u>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립농산</u>				
<u>물품질관리원장</u>				
2. <u>보조금등의 신청을 하는 경</u>		<삭 제>		
<u>우: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u>				
<u>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장·</u>				

면장·동장”이라 한다)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② 읍장·면장·동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
출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신청
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국립농
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송하
여야 한다.

②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농업경영체는 제1항에 따른 등
록신청서에 영 제2조의2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에 적
합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영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경
우: 농지대장, 그 밖에 국립농
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명서류

2. 영 제2조의2제1항제2호의 경
우: 등록신청일 이전 1년간 12
0만원 이상의 농산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에게 출하·판매를 증명
하는 서류. 다만, 육림, 인삼
등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 생산·육성 등 농산물을
해마다 출하·판매하지 않는
농업경영체의 경우에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
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

준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 · 시장도매인 · 중도매인 · 매매참가인 · 산지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영업을 허가받거나 신고 · 승계한 자

다. 「축산법」 제34조에 따라 개설된 가축시장을 통하여 가축을 구매하는 자

라.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마.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자

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

3. 영 제2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등기사항증명
서, 설립 및 변경신고 확인증,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명서류

4. 영 제2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농지를 경작하
거나 농업경영에 종사함을 증
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1개 이상의 서류.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
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
목에 따른 농산물의 판매
를 증명하는 서류(영 제2
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 한한다.)

나. 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다. 종자·모종·묘목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라.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명서류

<삭 제>

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의 내용 중 보조금등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읍장·면장·동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등록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과 부합하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⑤·⑥ (생략)

제3조의2(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생략)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

및 제2항-----
----- 사
실 여부와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 적합한 경우
에는 -----.

⑤·⑥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어업경영체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영 제2조의3에 따른 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타 필요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영 제2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 판매금액이 등록신청일 이전 1년간 120만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2조의3제1항제2호의 경우: 어업·양식업을 경영한 날이 등록신청일 이전 1년 중 60일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2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설립 및 변경신고 확인증 등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영 제2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공통제출: 어업·면허·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영 제2조의3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등록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과 부합하면 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신 설>

③ · ④ (생략)

제4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를 변경등록하려면

법인의 사업이 어업·면허·신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③ -----

----- 사실 여부와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
----- 적합한 경우에는 -----
--.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⑤ · 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4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① -----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변경
등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
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
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변
경등록신청서를 읍장·면장·
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읍
장·면장·동장 및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의 변경등록신청
서 처리업무에 관하여는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보조금등의 신청을 하면서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을 신
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
등록신청서

2. 영 별표 1 제5호의 정보를 변
경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
6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등의 신청과 농업경영정보 변경
등록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
경등록신청서를 읍장·면장·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읍
장·면장·동장은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
를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시스템 등을 통하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③·④ (생략)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농업경영체에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4조의2(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①·② (생략)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어업경영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변경등록된 -----
-----.

제4조의2(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변경등록된 -----
-----.